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89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 문화예술 진흥 및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제1조 내지 제2조)

나. 지역문화예술 지원대상사업 (안제5조)

- 문화예술 행사
- 국·내외 교류
- 발굴·전승보존·창달 및 조사·연구
- 창작 콘텐츠 육성
- 교육 및 홍보

다. 행사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(안제7조)

라.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·감독 (안제8조)

마. 문화예술·관광분야 자문단 구성 (안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“붙임”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 :

1) 입법예고(2015.6.16. ~ 7.6.) 결과 : 제출의견 있음 ⇒ 반영(제10조)

-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문화관광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여 문화·예술·관광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자문단 구성·운영 필요

2) 규제심사 : “해당없음”

3) 성별영향평가 : “원안동의”

4) 부패영향평가 : “조건부동의”

- 조례안 제2조제3호 중 ‘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평창군수(이하"군수"라 한다)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’는 부분은 군수가 임의로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의적 규정으로 재량의 남용과 특정단체에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하여 삭제

- 조례안 제3조(다른 법규와의 관계)는 불필요한 조항으로써 삭제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따라 평창군 문화예술 진흥 및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문화예술"이란 문학, 미술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, 서예, 국악, 건축, 사진, 전통예술 등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 및 작품을 말한다.
2. "전통문화예술"이란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가치, 지역의 세시풍속 등 계승할 만한 유·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.
3. “문화예술단체”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군 소재 법인·단체를 말한다. 다만, 평창군내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는 군외 소재 법인·단체를 포함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평창군 문화예술(이하 “문화예술”이라 한다) 육성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책무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(군의 주민을 말한다. 이 조례에서 같다)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그 기반시설을 확충한다.

③ 군수는 문화예술 분야 각종 사업, 교육・홍보,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.

④ 모든 군민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관련 행사(이하 “행사”라 한다)에 참여하며, 전통문화예술 계승과 군의 문화예술 육성시책에 협력해야 한다.

제5조(대상사업 및 지원) ①군수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문화예술 행사
2. 국내・외 교류
3. 발굴・전승보존・창달 및 조사・연구
4. 창작 콘텐츠 육성
5. 교육 및 홍보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문화예술단체 및 그 단체가 회원단체로 구성된 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

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신청 등) ① 제5조의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당 단체 등은 그 사업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7조 (행사의 위탁운영 등) ① 군수는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운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등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제8조(지도・감독)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・감독을 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・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 해당 단체 등의 운영 및 사업에 대

한 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.

제9조(환수)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도·감독결과 보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제10조(자문단) ① 군수는 문화예술·관광분야의 체계적인 준비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1.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발굴 및 선정
2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, 단장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단원은 군수가 문화예술·관광분야의 전문지식 및 권위가 있는 사람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단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

④ 자문단은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.

제11조(준용)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・교부・정산, 자문단의 회의공개・회의록작성, 단원의 위촉해제・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문화예술 육성사업에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조례 제4조(대상사업과 지원)

-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김광수
연락처	(033) 330 -2253

관계법령 발췌

□ 문화예술진흥법

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